



함안 성산산성 출토 4면 목간의 ‘代’

– 17차 발굴조사 출토 23번 목간을 중심으로

‘Dae(代)’ in Four-Sided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Seongsan Mountain Fortress of Hamman County

저자 이수훈
(Authors) Lee, Su-Hun

출처 [역사와경계 105](#), 2017.12, 153-177 (25 pages)
(Source) [History & the Boundaries 105](#), 2017.12, 153-177 (25 pages)

발행처 [부산경남사학회](#)
(Publisher)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98446>

APA Style 이수훈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4면 목간의 ‘代’. 역사와경계, 105, 153-177.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210.178.101.***
2020/03/25 13:2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함안 성산산성 출토 4면 목간의 ‘代’*

—17차 발굴조사 출토 23번 목간을 중심으로—

이 수 훈**

- 목차**
- I. 머리말
 - II. 목간의 판독
 - III. 목간의 해석과 ‘代’의 의미
 - 1. 목간의 해석과 ‘代法’
 - 2. ‘代’의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4면 목간(23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23번 목간은 문서목간으로서, 6세기 당시 신라의 지방행정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 실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이 23번 목간의 墨書 가운데 특히 ‘代’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代’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중고기 당시의 신라 국가권력이 어떤 형태로 일반 민을 지배하였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23번 목간의 墨書를 새롭게 판독·해석하였다. 이를 토대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 leesh@pusan.ac.kr

로 하여 기왕의 연구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代法’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代法’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뚜렷한 실체도 없는 ‘代法’의 존재를 토대로 하여 23번 목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거나, 중고기 사회의 단면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곤란함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 그동안 23번 목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용어인 ‘代’는, ‘작업 일수(날짜)’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곧 ‘代’는 ‘60日代’=‘60日의 작업 일수(날짜)’와 ‘30代’=‘30日의 작업 일수(날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고기 당시에 ‘작업 일수(날짜)’를 헤아리는 단위로 사용되었다고 짐작된다. ‘代’가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 흔적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곧 ‘곤장 열 대’나 ‘담배 한 대’, ‘주사 한 대’ 등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특히 현재 경상도지역의 작업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이 작업 일수(날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몇) 대가리’라는 단어의 語源이, 이 ‘代’로 판단된다. ‘작업 일수(날짜)’의 단위를 나타내는 ‘代(의존명사)’에 ‘가리(접미사)’가 결합한 것이 ‘대가리’(代+ 가리)라는 용어로 추정된다.

셋째, 23번 목간의 墨書 가운데 가장 판독하기가 힘든 4면의 9번째 글자를 ‘回’로 판독하였다. 이와 같은 판독은 글자의 모양과 運筆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그 결과 6세기 당시의 신라사회에 ‘回法’, 곧 ‘일반 민들의 力役 동원 횟수와, 1회(한 번) 동원될 때마다의 작업 일수(날짜)를 규정한 法’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주제어 성산산성, 4면목간, 대, 대법, 회법

I. 머리말

1992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목간이 처음 출토된 이래, 2016년까지 무려 300점이 넘는 목간이 발굴되었다.¹⁾ 그동안 축적된 목간의 수량

1)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木簡과 文字』 18(2017), 192쪽에 따르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재 목간으로 보고한 수량은 총 308점이며, 이 중에서 목간형태의 목기를 제외한,

과 내용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 특히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2014~2016년)에서 출토된 4면 목간은,³⁾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어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⁴⁾ 이 4면 목간은⁵⁾ 문서목간으로서, 지금까지 성산

실제 墨書가 확인되는 목간은 255점(1면목간 163점, 2면목간 89점, 4면목간 3점)이라고 한다.

2) 성산산성 목간에 대한 기왕의 연구성과는 다음의 논문들에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이용현, 「咸安 城山山城出土木簡과 6세기 新羅의 지방경영」 『東垣學術論文集』 5(2002); 李京燮,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2004); 全德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2008); 윤선태,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2012); 전덕재,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木簡과 文字』 9(2012); 최상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新羅文化』 31, 『木簡과 文字』 11(2013);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54(2016);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2016);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木簡과 文字』 18(2017).

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공개」(보고회 자료: 2017. 1. 4) 및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196~202쪽에서,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23점(1면목간 12점, 2면목간 10점, 4면목간 1점)의 목간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4)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韓國史研究』 177(2017);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5(2017); 박남수, 「신라 범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2017);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한국고대사탐구』 26(2017);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역사와 현실』 105(2017); 김창호, 『古新羅 金石文과 木簡』(서울: 주류성, 2017. 12 발간예정)에서 4면 목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 4면 목간이외에도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에서 주목되는 목간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壬子年(歲次)으로 추정되는 墨書가 있는 목간이 단연 돋보인다. 만약 여기의 墨書가 ‘壬子年’이 분명하다면(손환일·박남수·이부오의 견해), 이는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제작·사용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하지만 歲次가 기재된 목간은

산성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목간이 荷札(짐꼬리표)이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곧 이 23번 목간은 6세기 당시 신라의 지방행정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 실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⁶⁾

그 동안 이 23번 목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용어는 ‘代’이다. 과연 ‘代’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代’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중고기 당시의 신라 국가권력이 어떤 형태로 일반 民을 지배하였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0日代’와 ‘30代’의 형태로 기재된 23번 목간의 ‘代’는, 기존의 한국 고대 金石文과 木簡, 문헌자료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용어이다.

결국 ‘代’는 오직 23번 목간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용어인 셈인데, 전혀 비교·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아쉽다. 따라서 ‘代’의 정확한

지금까지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글자를 과연 ‘年’字로 읽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墨書를 선불리 歲次인 ‘壬子年’으로 단정하기가 주저된다. 이 문제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추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서 언급할 작정이다.

- 5)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196쪽 (표 1) 및 216쪽(사진)에서는 이 4면 목간을 23번 목간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일단 이 4면 목간을 23번 목간으로 부르거나 한다.
- 6) 다만 23번 목간에서 지방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城에 있으면서 眞乃滅村主로부터 보고를 받은 弥卽等智 大舍와 下智가 지방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45쪽 및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3쪽에서는 弥卽等智 大舍를 道使 級으로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간의 4면에서 眞乃滅村主에게 法에 근거하여 ‘30代’라는 사실을 고향, 伊毛羅 及 伐尺 역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23번 목간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하는 점은 앞으로의 해결 과제이다. 이 인물들의 실체가 드러나면, 당시 국가권력의 지방지배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의미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나마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代’의 의미를 천착한 몇몇 견해가 이미 제시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곧 ‘代’의 의미가 ‘(勞役에) 해당하는’ 또는 ‘그 (勞役의) 代價에 관한’을 뜻한다거나,⁷⁾ ‘대신하여’라고 보기도 하고,⁸⁾ 고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벼(볍짚) 한 묶음(1束)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 또는 벼 한 묶음의 수확량’을 1代로 이해하였다.⁹⁾

필자는 23번 목간에 보이는 ‘代’의 의미를 기왕의 견해처럼 규정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다. 23번 목간에 기재된 ‘代’는 ‘60日代’ 또는 ‘30代’의 형태로 ‘60(日)’이나 ‘30’과 같은 숫자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실은 ‘代’가 숫자 뒤에 붙어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견해에서는 ‘代’가 단위와 관련된 용어라는 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설령 단위를 표현한 용어라고 파악하였더라도 토지면적이나 수확량의 단위로 이해하여 쉽게 수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왕의 연구에서는 마치 ‘代法’이라는 법률이 중고기에 운용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¹⁰⁾ 과연 ‘代法’이 당시에 별도로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23번 목간의 해당 부분(3면)을 해석해 보면, 반드시 ‘代’와 ‘法’을 묶어서 ‘代法’으로 보아야 할 뚜렷한 이유를

7)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42~144쪽. 이는 어디까지나 23번 목간의 3면에 기재된 ‘60日代法’의 ‘代’가 가진 의미를 언급한 내용이다. 4면에 보이는 ‘30代’의 ‘代’는, 그 의미를 별도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또한 ‘60日代法’의 ‘代’와 마찬가지로 역역동원과 관련짓고, ‘役任’ 또는 ‘役任 수행(중사)’의 뜻으로 이해한 듯하다.

8)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6쪽.

9)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97~208쪽.

10) 지금까지 23번 목간을 검토한 기왕의 연구자들(최장미, 김창석, 손환일, 박남수, 이부오, 전덕재, 김창호)이 모두 당시에 ‘代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였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6쪽에서는 ‘代法’을 ‘대신한(임의적인) 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의 견해와 다른 각도에서 ‘代’의 의미와 ‘代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본고를 작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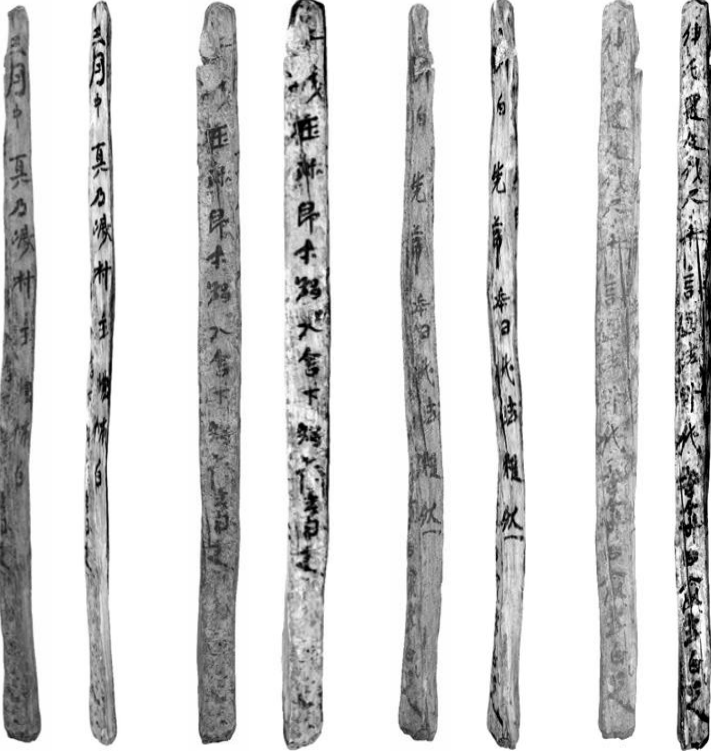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먼저 23번 목간의 판독문과 판독근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할 생각이다. 다음으로 제시한 목간의 판독문을 토대로 하여 목간의 해석을 나름대로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목간의 판독문과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代’의 의미를 새롭게 도출해보고, ‘代法’의 존재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본고가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23번 목간(4면 목간)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을 줄 믿는다. 先學들의 해량과 깨우침을 부탁드린다.

II. 목간의 판독

23번 목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이에 대한 판독이다. 목간을 어떻게 판독하느냐에 따라 당시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독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여러 연구자들이 예외 없이 판독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각각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음도 이 때문이다. 23번 목간의 墨書는 모두 57자(1면 11자, 2면 15자, 3면 10자, 4면 20자)인데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형편이다. 물론 목간의 표면이 몇 군데 파손되면서 墨書의 筆劃이 함께 떨어져나가 온전하지 않은 글자도 있지만, 2면의 1번째 글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판독이 가능한 정도이다.

따라서 연구자들 사이에 異見이 있는 글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1면의 글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고, 다만 2면과 3면, 4면에 기재된 몇 글자가 판독의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4면의 7번째·9번째

<23번 목간의 사진>11)



23번 목간 1면

23번 목간 2면

23번 목간 3면

23번 목간 4면

글자는, 23번 목간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墨痕과 筆劃이 희미하거나 부분적으로 지워져 무슨 글

11) 23번 목간의 사진(각 면의 왼쪽: 킬러, 오른쪽: 적외선)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2017년 1월 4일에 개최한 보고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다만 각 면의 기록순서는 한문의 書寫 방식에 따라 조정하였다(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27~131쪽에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보고회를 통해 제시한 목간 각 면의 잘못된 순서를 바로잡았으므로 이를 참고하였다).

자인지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당연히 연구자들에 따라 판독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비록 글자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필자 역시 기왕의 판독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판독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23번 목간의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나름대로 다시 정리한 판독문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란이 되는 글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덧붙여 두고자 한다.

<23번 목간의 판독문>

- 1면: 三月中眞乃滅村主儂怖白
- 2면: □城在弥卽ホ智大舍下智前去白之
- 3면: 卽白先節奉日代法稚然¹²⁾
- 4면: 伊毛羅及伐尺家言回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2면 6번째
글자(적외선)



2면 6번째
글자(컬러)



3면 5번째
글자(적외선)



3면 5번째
글자(컬러)

먼저 2면의 6번째 글자는 筆劃이 또렷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 ‘尔’¹³⁾ 또는 ‘ホ’(等),¹⁴⁾ ‘木’으로¹⁵⁾ 견해가 갈리고 있다. 기왕의 연구

-
- 12) 3면의 5번째 글자인 ‘奉’은 ‘六十’의 合字인데, 그렇게 판독한 근거는 본문에 간략하게 언급해 두었다.
 - 13)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202쪽;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22쪽.
 - 14)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31쪽 및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86~187쪽.
 - 15)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4쪽.

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글자의 모양이 ‘等’의 초서체인 ‘ホ’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글자의 윗부분에 ‘入’이 보이지 않으므로 ‘尙’로 보기는 어렵겠다.¹⁶⁾ 일단 ‘ホ’(等)으로 판독함이 좋을 듯하다.

3면의 5번째 글자 역시 筆劃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 ‘六十’의 合字¹⁷⁾ 또는 ‘本’으로¹⁸⁾ 달리 판독하고 있다. 이 글자의 경우, 글자의 모양만 가지고 판독한다면 ‘本’에 가깝다. 하지만 글자의 가장 윗부분에 점(丶)이 찍혀 있어 이를 고려하여 판독할 수밖에 없다. 運筆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점(丶)을 찍고 바로 밑의 가로획(一)을 이어서 썼다고 판단되므로, ‘六’의 윗부분인 ‘丷’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글자의 상반부는 ‘六’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다만 ‘六’을 쓰면서 ‘八’의 왼쪽 획을, ‘丷’의 가로획(一) 밑이 아닌 위에서부터 내려 굽다가 보니, 그 모양이 ‘大’처럼 비추어졌다고 생각된다.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十’이 분명하므로, 이 글자는 일단 ‘六十’의 合字로 읽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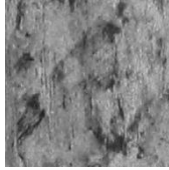
4면의 2번째 글자는 기왕의 연구에서 ‘他’¹⁹⁾ 또는 ‘沱’으로²⁰⁾ 판독

-
- 16) 이 글자는 특히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86~187쪽에서 ‘尙’가 될 수 없고 ‘ホ’(等)임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 17)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202쪽;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30쪽;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22쪽.
- 18)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5~46쪽 및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87~189쪽.
- 19)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202쪽;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2쪽;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23쪽;
- 20)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29쪽 및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다. 오히려 글자의 모양과 筆劃의 연결 상태를 볼 때, 이 글자는 ‘刁’으로 읽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글자 왼편의 ‘丿’로 보이는 부분은 컬러 사진을 확대해 보면, 墨痕이 아니라 나무 자체의 흠결로 판단된다.



4면 2번째
글자(적외선)



4면 2번째
글자(컬러)



4면 7번째
글자(적외선)



4면 7번째
글자(컬러)

4면의 7번째 글자는 윗부분의 筆劃이 온전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살아있는 墨痕을 토대로 하여 ‘宀’²¹⁾ 또는 ‘宀’으로²²⁾ 판독하고 있다. 이 글자를 ‘宀’나 ‘宀’으로 읽기에는 ‘宀’ 부분의 筆劃이 명확하지 않을²³⁾ 뿐만 아니라 ‘木’의 가로획(一)보다 너무 좁아 주저된다. 그리하여 ‘來’의 행서체인 ‘來’로 볼 여지는 없을까 살펴보았는데, ‘來’의 제일 윗쪽 ‘十’으로 교차하는 부분의 墨痕을 이 글자에서 찾지 못하여,²⁴⁾ 일단 단정을 유보한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 189쪽.

- 21)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202쪽;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23쪽;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90~191쪽; 김창호, 『古新羅 金石文과 木簡』, 194쪽.
- 22)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29쪽 및 박남수, 「신라 범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7쪽.
- 23) 이 글자의 윗부분인 ‘宀’ 중에서 점(丶)을 제외한 ‘宀’은, 적외선 사진이 아닌 컬러 사진을 확대해서 볼 경우, 거의 墨痕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미한 상태이다.
- 24) 본래 붓이 두 번 교차하는 부분의 墨痕이 다른 데에 비해 진한 편으로,

이 글자는 ‘宀’나 ‘宀’가 가장 유력한 선택인데, ‘宀’ 아랫부분에 빠침 (ノ)의 筆劃과 ‘米’의 형태가 확인되므로, ‘宀’으로 읽는 편이 좋을 듯하다.



4면 9번째 글자(적외선)



4면 9번째 글자(컬러)

4면의 9번째 글자는 筆劃의 윤곽은 확인되지만, 글자의 모양이 익숙하지 않아서 가장 판독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이 글자를 모르는 글자로 남겨두거나²⁵⁾ ‘廻’(또는‘迴’, ‘迴’)로 판독하였으며,²⁶⁾ ‘驅’의 이체자 ‘迥’와 ‘力’의 조합자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²⁷⁾ 그동안 이 글자의 원편을 ‘宀’ 또는 ‘宀’으로 보았으나, 이 부분에 남아있는 筆劃을 고려할 때, 그렇게 판단하기가 힘들겠다.

실제 위에 제시한 사진(적외선·컬러) 자료를 통해 이 글자의 원편과 아랫부분을 보면, 약간 비스듬히 내려 그은 ‘丨’과 가로획(一)을 확인할 수가 있다. ‘丨’의 筆劃은 원편 아래까지 길게 내려온데 반해, 가로획(一)은 ‘丨’의 아래 끝부분보다 조금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른편으로 그어졌다. 자세히 보면, ‘丨’과 가로획(一)은 서로 분리되어 있

만약 ‘耑’가 맞다면 당연히 필획이 서로 만나는 ‘十’ 부분에 墨痕이 남아 있어야 한다.

- 25)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202쪽 및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23쪽.
- 26)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29~130쪽;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91쪽.
- 27)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7쪽.

어, 運筆할 때 연결해서 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또한 ‘丨’과 가로획(一)의 바로 안쪽(‘丨’의 아래, ‘一’의 왼편 위)에 있는 筆劃은 마치 ‘丨’과 연결된 것 같지만, 컬러 사진을 보면 별개의 筆劃이다. 뿐만 아니라 이 筆劃의 오른편 끝과 가로획(一)의 윗부분이 살짝 붙어 있는 듯하나, 이 역시 運筆의 흐름으로 보아 하나로 연결된 형태라기보다는 각각 따로 쓴 筆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筆劃을 가지고 ‘𠄎’ 또는 ‘𠄏’으로 볼 수는 없는 셈이다. 이 사실을 참고하면, 이 글자를 廻(또는 迴, ‘廻’)나 ‘驅’의 이체자인 ‘廻’와 ‘力’의 조합자로 판독하기는 힘들겠다.

차라리 이 글자는 크게 보아서, ‘口’ 안에 작은 글자가 들어있는 모양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결국 작은 글자의 획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글자를 판독하는 열쇠는 작은 글자가 쥐고 있는 셈이다. 곧 ‘口’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글자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 글자의 판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口’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글자의 획수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囚’와 ‘囚’, ‘回’ 등이 이 글자의 후보로 떠오른다. 작은 글자의 첫 인상은 ‘刀’나 ‘力’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왼편 아래의 筆劃을 함께 고려할 경우, 그렇게 읽기가 어렵겠다. 오히려 작은 글자는 ‘口’를 위에서부터 행서체로 運筆한 뒤, 왼편 아래까지 뻗어 돌린 모양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이런 몇 가지 점들을 감안하여 4면의 9번째 글자는, ‘口’안에 ‘口’가 들어있는 ‘回’로 판독해 둔다.²⁸⁾

Ⅲ. 목간의 해석과 ‘代’의 의미

28) 4면의 9번째 글자가 ‘口’ 안에 ‘方’이 들어있는 ‘國’의 이체자 ‘囡’이 아닐까도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口’ 안의 작은 글자를 ‘方’으로 보기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筆劃이 마음에 걸려 단정을 유보하였다.

1. 목간의 해석과 ‘代法’

앞장에서 23번 목간의 판독을 시도하였다. 23번 목간의 경우, 전반적으로 墨書의 상태가 선명하여 판독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몇 군데 중요한 글자의 판독을 두고 연구자들 사이에 異見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필자 역시 논란이 되는 몇 글자를 새롭게 판독하고, 그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독문도 작성하였다. 지금부터 필자가 작성한 판독문을 토대로 하여 23번 목간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23번 목간의 실체는 물론이거니와 중고기 당시의 사회모습도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23번 목간이 모두 4면으로 이루어진 만큼, 1면부터 4면까지 순서대로 각각의 墨書를 해석하고, 마지막에 이를 종합할 작정이다.

1면 : 3월에 眞乃滅村主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웁니다.

23번 목간 1면의 해석은 연구자들 사이에 대체로 비슷하여, 특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는 편이다. 다만 ‘懼怖’를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다’로 해석하지 않고, 眞乃滅村主의 인명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²⁹⁾

2면 : □城에 계신 弥卽等智 大舍와 下智 앞에 (眞乃滅村主가) 나아가 아웁니다.

23번 목간 2면의 해석부터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대부분 2면에서 ‘나아가 아웁니다’(去白之)의 주체를 1면에 보이는 眞乃滅村主로, 이 眞乃滅村主로부터 보고를 받은 상대를 弥卽等智 大舍와 下智(또는 弥卽等智 大舍下智나 卽木智 大舍下智)로 이해하고 있다.³⁰⁾ 이와 달리 2면을 ‘□城에 있는 弥卽等智 大

29) 김창호, 『古新羅 金石文과 木簡』, 193~195쪽.

솨가 下智 앞에 나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로 해석하고, '아뢰는'(白) 주체가 弥卽等智 大솨이며, 下智가 弥卽等智 大솨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상대라는 견해도 있다.³¹⁾

이렇게 이해할 경우, 1면에서 眞乃滅村主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뢰었는데, 2면에서 무슨 이유로 眞乃滅村主는 빠지고 그 대신에 弥卽等智 大솨가 갑자기 등장하여 下智에게 아뢰었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下智가 어디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인지, 弥卽等智 大솨가 있는 □城과 무슨 관계이기에 弥卽等智 大솨로부터 보고를 받는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관등이 있는 弥卽等智 大솨가 관등이 없는 하자에게 아뢰는 것이 과연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런 이해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³²⁾

3면 : (眞乃滅村主가) 곧 아뢰기를, 지난번의 60日代는 法에 (체대로 따르지 않은) 유치한(미숙한) 판단이었습니다.

23번 목간 3면의 해석은 5번째 글자를 어떻게 판독하느냐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나누어진다. 곧 5번째와 6번째 글자를 각각

-
- 30)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202쪽;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8~49쪽;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93~195쪽; 김창호, 『古新羅 金石文과 木簡』, 193~195쪽. 다만 손환일과 박남수, 김창호는 '大솨'가 아닌 '大솨下智'까지를 하나의 관등명(12등급)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박남수는 '弥(머)를 앞의 '在'와 묶어 '在弥'(있으며, 있으면서)로 새기고, '卽木智'만 인명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미 Ⅱ장(목간의 판독)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장미와 손환일은 弥卽等智를 弥卽尔智로 판독하였다.
 - 31)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35~138쪽.
 - 32)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93~195쪽에서 김창석의 해석이 갖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60日’과³³⁾ ‘本日’로³⁴⁾ 읽은 결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도출되었다. 이미 II장(목간의 판독)에서 글자의 판독 문제를 검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다. 다만 ‘本日’로 판단할 경우, ‘지난번’(先節)이라는 때를 이미 밝혔는데, 또 다시 때를 바꾸어 ‘지금(또는 그 날)’(本日)이라고 굳이 표현하였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뿐만 아니라 3면의 ‘지난번’(先節)과 대비하여 4면에 ‘지금’(今)이라고 분명하게 과거와 현재를 구분·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거기에 덧붙여 ‘지금(또는 그 날)’(本日)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지 궁금하다. 더욱이 4면에서는 ‘지금’의 뜻으로 ‘本日’이 아닌 ‘今’으로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기왕의 연구에서 한결같이 3면의 ‘代’와 ‘法’을 묶어서 ‘代法’으로 해석하고, 마치 ‘代法’이라는 법률이 중고기에 운용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과연 ‘代法’이 당시에 별도로 존재하였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代’와 ‘法’을 묶어서 ‘代法’으로 해석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에 ‘(60日)代法’이 존재하였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률(‘代法’)을 두고, 眞乃滅村主가 함부로 ‘稚然’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60日)代法’이 시행되었다면, ‘代’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은 별도의 법률인 ‘代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23번 목간의 4면에서는 왜 ‘代法’이 아닌 ‘回法’으로³⁵⁾ ‘(30)代’를 규정하였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4면에서 ‘回法’에 근거

33)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202쪽;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30쪽;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22쪽.

34)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5~46쪽 및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87~189쪽.

35) ‘回法’의 성격은 본 절(목간의 해석과 ‘代法’)의 뒷부분(목간 4면의 해석 부분)에서 별도로 언급해 두었다.

하여 바로잡은 것이, ‘(30)代’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곧 바로잡은 것이 ‘代’의 뒤에 ‘法’이 붙은 형태인 ‘(30)代法’이 아니라 그냥 ‘(30)代’로서, 바로 뒤에 ‘法’이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처음에 眞乃滅村主가 잘못 적용한 것 역시 ‘(60日)代法’이 아닌, ‘代’ 뒤에 ‘法’이 붙지 않은 ‘(60日)代’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중고기 당시에 ‘(60日)代法’이 존재하였으며, ‘(60日)代法’ 그 자체가 문제였다면, 당연히 바로잡는 것도 ‘(60日)代法’에 맞추어 ‘(30)代法’으로 일관되어야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실제 4면에서는 잘못 적용한 ‘(60日)代法’을 바로잡은 것이 ‘(30)代法’이 아닌 ‘(30)代’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중고기 당시에 ‘代法’이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3면의 ‘60日代法’은 ‘60日’과 ‘代法’으로 각각 묶어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60日代’와 ‘法’으로 끊어 읽어야 타당하다고 하겠다.

4면 : 伊毛羅及伐尺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眞乃滅村主에게) 분명하게 말하여, 回法에는 30代임을 밝히므로, 지금 30日 분량의 식량을 책정하였음을 (眞乃滅村主가) 나아가 아뢰니니다.

23번 목간 4면의 해석은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글자의 판독에서부터 기인하는데, 특히 4면의 7번째와 9번째 글자가 논란의 핵심이다. 먼저 7번째 글자는 이미 II장(목간의 판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다른 ‘窠’와 ‘窠’으로 판독하였다. 그 결과 전혀 다른 해석이 도출되었다. 곧 ‘窠地’(녹봉으로 지급되는 토지)³⁶⁾ 또는 ‘窠’(급료)로³⁷⁾ 이해하거나,

36)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12쪽.

37)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90~191쪽; 김창호, 『古新羅 金石文과 木簡』, 207쪽.

‘살피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³⁸⁾

이 가운데 어느 쪽의 해석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글자의 판독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이 글자를 ‘冢’으로 판독하고, ‘冢言’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眞乃滅村主에게) 분명하게 말하여’로 해석해 둔다. ‘冢言’의 주체인 伊毛權及伐尺이 어떤 인물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及伐尺이라는 외위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眞乃滅村主에게 ‘回法’을 곁한 사실을 고려할 때, 중앙과 지방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된다.

24번 목간의 9번째 글자는 이미 앞의 II장(목간의 판독)에서 ‘回’로 판독한 바 있다. ‘回’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여기서는 일단 ‘번’이나 ‘차례’, ‘次’라는 漢字 본래의 뜻과,³⁹⁾ ‘回法’ 바로 뒤에 숫자 ‘30(代)’이 기재된 사실을 참고하여, ‘回’를 ‘몇 번’, ‘몇 차례’, ‘몇 차’ 등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30(代)’은 해당된 ‘回’(번·차례·차)에 부과된 어떤 작업의 숫자가 ‘30’만큼이며, 그 작업(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代’임을 보여준다.

다음의 2절(‘代’의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代’는 ‘(力役に 동원된 일반 民들의) 작업 일수(날짜)’를 헤아리는 단위로 생각된다. 이런 ‘代’의 의미를 고려할 때, 여기의 ‘回’는 일반 民들이 力役に 동원되는 횟수를 일정한 기간 동안 ‘몇 번’(‘몇 차례’, ‘몇 차’)할 것인지, 또한 1회(한 번) 力役に 동원될 때마다 작업 일수(날짜)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담고 있는 용어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규정한 ‘回’의 ‘法’이 다름 아닌 ‘回法’으로 판단된다. 곧 ‘回法’은 ‘일반 民들의 力役 동원 횟수와, 1회(한 번) 동원될 때마다의

38)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29쪽 및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7쪽.

3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3(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0), 429쪽에 따르면, ‘回’에 ‘번’이나 ‘차례’, ‘次’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작업 일수(날짜)를 규정한 法'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이는 '回法' 바로 뒤에 30일간의 작업 일수('30代')와, 작업 일수에 따라 책정된 30일 분량의 식량('30日食')이⁴⁰⁾ 기재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이 '回法'에 규정된, 村民들을 1회(한 번) 力役に 동원할 때의 작업 일수(날짜)를, 眞乃滅村主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60日代'로 산정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를 '30代'로 바로잡은 것이 23번 목간의 내용으로 여겨진다. 결국 24번 목간의 3면과 4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60日代'와 '30代'의 '代'는 '代法'이 아니라 '回法'의 적용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23번 목간은 증고기에 '回法'이라는 법률이 力役 동원과 관련하여 운용되었음을 새롭게 확인시켜,⁴¹⁾ 당시 사회의 일면을 파악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다. 23번 목간에 보이는 '代'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점은 절을 달리 하여 검토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23번 목간의 목서를 해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면 : 3월에 眞乃滅村主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뢰니다.
- 2면 : □城에 계신 弥卽等智 大舍와 下智 앞에 (眞乃滅村主가) 나아가 아뢰니다.
- 3면 : (眞乃滅村主가) 곧 아뢰기를, 지난번의 60日代는 法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유치한(미숙한) 판단이었습니다.
- 4면 : 伊毛羅及伐尺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眞乃滅村主에게) 분명하게 말하여, 回法에는 30代임을 고평하므로, 지금 30日 분량의 식량을 책정하였음을 (眞乃滅村主가) 나아가 아뢰

40) 23번 목간 4면의 '30日食'을 金昌錫, 「威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38~139쪽 및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59쪽에서는 각각 '30일에 해당하는 식료' 또는 '30일분의 식량'으로 파악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41)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68쪽 및 69쪽의 주 107)에서는, '回'를 '洵'와 '力'의 조합자로 판독하고, 그 의미를 力役 징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法을 '役法'('力役に 내보내는 법' '力役을 부리는 법')으로 규정하여 주목된다.

니다.

2. ‘代’의 의미

주지하다시피 이 23번 목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용어는 ‘代’이다. 과연 ‘代’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代’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중고기 당시의 신라 국가 권력이 어떤 형태로 일반 民을 지배하였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0日代’와 ‘30代’의 형태로 기재된 23번 목간의 ‘代’는, 기존의 한국 고대 金石文과 木簡, 문헌자료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용어이다. ‘代’는 단지 23번 목간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용어인 만큼, 자체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미 I 장(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왕의 연구에서는 ‘代’의 의미를 ‘(勞役에) 해당하는’ 또는 ‘그 (勞役의) 代價에 관한’을 뜻한다거나,⁴²⁾ ‘대신하여’라고 보기도 하고,⁴³⁾ 고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벼(볍짚) 한 묶음(1束)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 또는 벼 한 묶음의 수확량’을 1代로 이해하였다.⁴⁴⁾ 하지만 ‘代’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3번 목간에 기재된 ‘代’는 ‘60日代’ 또는 ‘30代’의 형태로 ‘60(日)’이나 ‘30’과 같은 숫자와 결합하고 있어서,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代’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부터 비록 극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만, ‘代’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주목되는 점은 23번 목간 3면의 ‘60日(의) 代’라는 표현에서,

-
- 42) 金昌錫, 「威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42~144쪽.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23번 목간의 3면에 기재된 ‘60日代法’을 ‘60일 동안의 力役 동원과 관련된 法’으로 보았다.
- 43)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46쪽.
- 44)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197~208쪽.

당시의 ‘代’가 ‘日’을 단위로 계산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代’와 ‘日’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사실은, 목간 4면의 기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바로 ‘30代’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30日’만큼의 ‘食’(식량)을⁴⁵⁾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30代’와 ‘30日’이 똑같이 숫자 ‘30’을 사용한 점은, ‘代’와 ‘日’이 그대로 ‘1’씩 대응한다는 사실, 곧 1‘代’가 1‘日’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이는 ‘30代’가 바로 ‘30日의 代’로서, 중고기 당시에 ‘30日代’라고도 표기하였음을 엿보게 한다.⁴⁶⁾

그러므로 목간 3면의 ‘60日代’ 역시 ‘60代’로서, ‘60日代’에서 ‘日’을 생략한 채 그냥 ‘60代’라고 표기하여도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30代’=‘30日代’, ‘60日代’=‘60代’의 사례를 참고할 때, 중고기 당시에는 ‘日代’와, ‘日’을 생략한 ‘代’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였다고 여겨진다. ‘日’을 생략한 채 그냥 ‘代’라고만 표기하여도, ‘代’ 속에는 이미 ‘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목간 3면과 4면의 ‘60日代’와 ‘30代’, ‘30日食’이라는 墨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명한 사실은 ‘代’가 ‘일수’(날짜)를 단위로 책정이 되었으며, 이 ‘代’는 반드시 책정된 ‘일수’(날짜)만큼의 식량 공급과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⁴⁷⁾ 결국 ‘代’의 의미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는, ‘일수’(날짜)와 ‘식량’이다. 당시의 ‘代’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함축한 용어였다고 생각된다. 곧 ‘代’는 ‘일수’(날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식량 공급이 수반된 어떤 일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眞乃滅村 출신의 村民들에게 식량 공급이 수반된 어떤 일—그것도 30일 동안이나 부담해야 되는 일—은, 力役 동원에 따른 작업 이외에 달리 떠오르지 않는다. 다

45) 앞의 주 40)과 같음.

46)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139쪽에서도 ‘30代는 30日代의 의미로서 앞에 60日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日’자를 생략했다고 생각된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47) 23번 목간의 3면과 4면에 보이는 ‘60日代’와 ‘30日食’의 ‘日’은, 날짜를 세는 단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만 力役 동원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은, 23번 목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특정할 수가 없을 따름이다.

이처럼 23번 목간의 ‘代’는, ‘일수’(날짜)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식량 또한 거기에 맞추어 책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力役 동원과 관련된 ‘작업 일수(날짜)’를 의미하는 용어로 판단된다. 이런 판단은 이 23번 목간이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점과도 부합한다. ‘回法’에 의거하여 성산산성의 力役に 1회(한번) 동원된 眞乃滅村 출신 村民들의 작업 일수(날짜)—처음에는 眞乃滅村주가 村民들의 작업 일수(날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60日代’로 산정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를 뒤에 ‘30代’로 바로잡았음—와, 거기에 따라 식량이 책정된 내용을 담은 문서목간이 23번 목간으로 생각된다.

곧 중고기 당시에 일반 民들을 차질 없이 力役に 동원하고, 동원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民들이 저마다 부담해야 될 力役의 종류와 일수(날짜)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마땅하다. 이 때 ‘작업 일수(날짜)’를 헤아리는 단위로 ‘代’가 사용되었다고 짐작된다. 그 흔적이 23번 목간에 ‘60日代’=‘60일의 작업 일수(날짜)’와 ‘30代’=‘30일의 작업 일수(날짜)’의 형태로 남았다고 판단된다.

‘代’가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 흔적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곧 ‘곤장 열 대를 때리다’나 ‘담배 한 대 피우고 하자’, ‘주사 한 대면 괜찮을 겁니다’ 등의 사례를⁴⁸⁾ 통해서 확인된다. 특히 현재 경상도지역의 작업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이 작업 일수(날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몇) 대가리’라는 단어의 語源이, 이 ‘代’로 판단된다. ‘작업 일수(날짜)’의 단위를 나타내는 ‘代(의존명사)’에 ‘가리’(접미사)가 결합한 것이 ‘대가리’(代+가리)라는 용어로 추정된다.⁴⁹⁾ ‘代’의 의미를 오늘날 경상도 지역의 작업현장에서 일용근로

48) 이기문(감수), 『동아 새국어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0), 492쪽.

49) 실제 경상도 지역의 작업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끼리 ‘지금까지 몇 대가리(몇 일) 일했노(일을 하였느냐)?’ 또는 ‘이 일 마칠라마(마치려면) 앞으

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가리’와 같은 ‘작업 일수(날짜)’로 이해해야
만, 비로소 23번 목간의 ‘60日代’와 ‘30代’도 각각 ‘60일의 작업 일수
(날짜)’와 ‘30일의 작업 일수(날짜)’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V. 맺음말

본고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4면 목간(23번)의 실체를 파악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23번 목간은 문서목간으로서, 6세기 당시
신라의 지방행정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 실상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본고는 이 23번 목간의 墨書 가운데 특히 ‘代’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代’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만 중고기 당시의 신라 국가권력이 어떤 형태로 일반 民을 지배하였
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
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23번 목간의 墨書를 새롭게 판독·해석하였다. 이
를 토대로 하여 기왕의 연구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代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代法’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그리하여 뚜렷한 실체도 없는 ‘代法’의 존재를 토대로 하여 23
번 목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거나, 중고기 사회의 단면을 파악
하려는 시도는 곤란함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 그동안 23번 목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용어인 ‘代’는, ‘작
업 일수(날짜)’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곧 ‘代’는 ‘60日
代’=‘60일의 작업 일수(날짜)’와 ‘30代’=‘30일의 작업 일수(날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고기 당시에 ‘작업 일수(날짜)’를 헤아리는

로 몇 대가리(몇 일) 일하모(일을 하면) 되겠노(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작업 일수(날짜)’를 헤아리는 단위로 ‘대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단위로 사용되었다고 짐작된다. ‘代’가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 흔적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곧 ‘곤장 열 대’나 ‘담배 한 대’, ‘주사 한 대’ 등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특히 현재 경상도지역의 작업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이 작업 일수(날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몇) 대가리’라는 단어의 語源이, 이 ‘代’로 판단된다. ‘작업 일수(날짜)’의 단위를 나타내는 ‘代(의존명사)’에 ‘가리’(접미사)가 결합한 것이 ‘대가리’(代+ 가리)라는 용어로 추정된다.

셋째, 23번 목간의 墨書 가운데 가장 판독하기가 힘든 4면의 9번째 글자를 ‘回’로 판독하였다. 이와 같은 판독은 글자의 모양과 運筆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그 결과 6세기 당시의 신라사회에 ‘回法’, 곧 ‘일반 民들의 力役 동원 횟수와, 1회(한 번) 동원될 때마다의 작업 일수(날짜)를 규정한 法’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한된 자료를 해석하면서 논리적인 비약을 거듭하여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지만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빠뜨린 문제들도 있었다. 특히 성산산성 목간의 제작·사용 연대를 함께 다루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이다. 이 문제는 장차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공개」(보고회 자료: 2017. 1. 4).
-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54(2016).
- 金昌錫,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韓國史研究』 177(2017).
- 김창호, 『古新羅 金石文과 木簡』(서울: 주류성, 2017. 12 발간예정).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3(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0).
-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2017).
- 손환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5(2017).
- 윤선태,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2012).
-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2016).
- 李京燮,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2004).
- 이기문(감수), 『동아 새국어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0).
- 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한국고대사탐구』 26(2017).
- 이용현, 「咸安 城山山城出土木簡과 6세기 新羅의 지방경영」 『東垣學術論文集』 5(2002).
- 全德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2008).
- 전덕재,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木簡과 文字』 9(2012).
- 전덕재,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역사와 현실』 105(2017).
- 최상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新羅文化』 31, 『木簡과 文字』 11(2013).
- 최장미,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木簡과 文字』 18(2017).

■ Abstract

‘Dae(代)’ in Four-Sided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Seongsan Mountain Fortress of Hamman County

Lee, Su-Hun*

This paper examines the word ‘Dae(代)’ in particular, among ink inscriptions in four-sided wooden tablets (Article 23) excavated from Seongsan Mountain Fortress of Hamman County.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fter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Dae-beop(代法)’ accepted as the established fact in previous researches,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was no substance of ‘Dae-beop.’ By the same token, some fundamental problems would arise if the whole contents in four-sided wooden tablets were judged on the basis of ‘Dae-beop.’

Secondly, it is confirmed that the word ‘Dae(代)’ in four-sided wooden tablets that has drawn most attention so far was used to refer “a day’s work amount.” Some evidence showing that the word ‘Dae’ was used to denote a unit remained in the Joseon Dynasty and even today.

Thirdly, the ninth word that was especially indecipherable among the ink inscriptions in the four-sided wooden tablet is deciphered. As a result, it is proven that ‘Hoe-beop(回法)’ existed in Silla society during the 6th century.

Key Words Seongsan Mountain Fortress(城山山城), Four-Sided Wooden Tablets(四面木簡), Dae(代), Dae-beop(代法), Hoe-beop(回法)

논문투고일 : 2017. 11. 17. 논문심사일 : 2017. 12. 23. 게재확정일 : 2017. 12. 27.

* Professor, Dept. of History,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sh@pusan.ac.kr